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4·4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김도운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474
----------	------

발의연월일 : 2025. 10. 2.

발의자 : 김도운, 박경흠, 문기호  
안영호, 정재환, 강혜순  
홍영진, 김태욱, 이명녀  
문희성

1. 제정이유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 지역에서 일어난 4·4독립만세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기리고,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여, 후대 교육 및 문화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정의(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기념사업 등(안 제4조)
- 사업의 위탁(안 제5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관계법규: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5. 참고사항

가. 조례안 예고: 2025. 9. 24. ~ 10. 1.(7일간) / 의견없음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 근 거 법 규

### □ 「문화예술진흥법」

-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4·4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4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조례 등의 시행에 따라 의무적·임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의 시행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까지 포함하여 실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자료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이미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비용추계 대상이 보안을 요하는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수 없는 경우
4.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2. 미첨부 사유

-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 추계 불가

### 3. 작성자

- 소 속: 문화관광과
- 직 급: 지방행정8급
- 성 명: 김민석
- 연락처: (052)290-3664

##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4·4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영4·4독립만세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병영4·4독립만세운동”이란 1919년 4월 4일 병영장날에 모여 일제에 항거하여 조국의 독립을 외쳤던 의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영4·4독립만세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등) ① 구청장은 병영4·4독립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희생·공헌자 추모행사
2. 만세운동 재현행사
3. 교육 및 홍보
4. 기념관·전시관·조형물·상징물 등의 조성·관리
5. 역사 사료, 문헌, 증언·구전 등의 자료 수집 및 분석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단체나 비영리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제277회-행정자치위제1차부록)

제5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